

공 보

제620호 2017. 11. 29.(수)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418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4
거창군 조례 제2419호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거창군 조례 제2420호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 비에 관한 조례	16
거창군 조례 제2421호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21
거창군 조례 제2422호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28
거창군 조례 제2423호 거창군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6
거창군 조례 제2424호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44
거창군 조례 제2425호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50
거창군 조례 제2426호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케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 정조례	55
거창군 조례 제2427호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63
거창군 조례 제2428호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73
거창군 조례 제2429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79
거창군 조례 제2430호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88
거창군 조례 제2431호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92
거창군 조례 제2432호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95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233호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
비에 관한 규칙 100
거창군 규칙 제1234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04
거창군 규칙 제1235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14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17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통보) 119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145호 삼봉산권역 시행계획(변경) 고시문 126
거창군 고시 제2017-146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128
거창군 고시 제2017-147호 거창군계획시설(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결정(변경) 고시 129
거창군 고시 제2017-14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협조 134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7-1250호 거창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36
거창군 공고 제2017-1251호 전기발전사업허가 양도 양수 인가 공고 141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7-26호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42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7-27호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156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7-28호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 166
거창군 보건소 공고 제2017-12호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공고문 182

거창군 거창읍 공고 제2017-93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86

회 관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418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3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1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제10호 중 “범위 내의”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입세대 전입고등학생 및 전입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평생교육센터)

가. 전입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나. 전입대학생: 학기별 10만원(재학 중 최대 4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명이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의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입대학생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전입세대 지원 중일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20조제1항제8호 개정규정은 2018년 1학기부터 적용하고, 제20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전입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5. (생략)</p> <p>6. “전입세대”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 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세대를 말한다.</p> <p>7. (생략)</p> <p>8. “전입대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대학생을 말한다.</p> <p>9. “전입고등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p> <p>10.~11. (생략)</p> <p>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p> <p>1. 전입세대에 대한 30만원 범위 내의 전입 정착금 또는 기념품 지원(행정과)</p> <p>2.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범위 내의 영농정착금 지원(농업기술센터)</p> <p>3. 전입세대에 대한 300만원 범위 내의 빈집정비 지원금 지원(도시건축과)</p> <p>4. 전입세대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변경 비용 전액 지원(민원봉사실)</p> <p>5. 전입세대에 대한 20리터 45매 이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다만, 전입세대가 원하면 지원금액 내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규격변경 가능) (환경과)</p> <p>6. 전입대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 내의</p>	<p>제3조(정의) -----</p> <p>-----</p> <p>1.~5. (현행과 같음)</p> <p>6. -----2년</p> <p>-----</p> <p>-----6개월-----</p> <p>-----</p> <p>7. (현행과 같음)</p> <p>8. -----</p> <p>-----</p> <p>-----</p> <p>9. -----</p> <p>-----</p> <p>-----</p> <p>10.~11. (현행과 같음)</p> <p>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① --</p> <p>-----</p> <p>-----</p> <p>-----</p> <p>-----</p> <p>1. -----범위에서</p> <p>-----</p> <p>2. -----범위에서</p> <p>-----</p> <p>3. -----범위에서</p> <p>-----</p> <p>4. -----</p> <p>-----</p> <p>5. -----</p> <p>-----</p> <p>-----</p> <p>6. -----범위에서</p>

<p>장학금 지원(평생교육센터)</p> <p>7. 전입고등학생에 대한 10만원 <u>범위 내의</u> 장학금 지원(평생교육센터)</p> <p>8. 전입세대 <u>고등학생에 대한 분기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평생교육센터)</u></p> <p>9. 전입세대에 대한 5장 이내의 문화예술 관람권 지원(문화관광과)</p> <p>10. 국적취득자에 대한 50만원 <u>범위 내의</u> 지원금 지원(평생교육센터)</p> <p>11.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소관부서) <u><신 설></u></p>	<p>-----</p> <p>7. -----<u>범위에서</u> -----</p> <p>8. 전입세대 전입고등학생 및 전입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평생교육센터) 가. 전입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나. 전입대학생: 학기별 10만원(재학 중 최대 4회)</p> <p>9. ----- -----</p> <p>10. -----<u>범위에서</u> -----</p> <p>11. -----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명이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의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입대학생은 제외한다.</u></p>
---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전입세대 전입대학생 학자금(제20조제1항제8호)
 - 학기별 10만원(연간 2회)
- 1인 전입세대 지원(제20조제2항)
 - 2명 이상 전입세대 지원규모의 2분의 1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출	전입대학생	1	1	1	1	1	5
	1인 전입세대	128	128	128	128	128	640
	계	129	129	129	129	129	645

※ 산출기초: 전입세대 대학생 5명(추정) × 20만원(연간) = 1백만원 (* 현재 고등학생 13명 지원중)
 1인 전입세대 800명 × 16만원(연간) = 128백만원

3. 관련 의견

- 우리군 전입효과를 강화하고자 전입자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임 영 만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11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우리군 전입효과를 강화하고자 전입세대에 대한 용어정의를 변경하고, 1인세대 전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입세대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3조제6호)

- 다른 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세대
⇒ 6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세대

나. 전입세대 전입대학생 학자금 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20조제1항제8호)

- 학기별 10만원(재학 중 최대 4회)

다. 1인 전입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

- 지원내용: 2명 이상 전입세대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함
-전입정착금: 15만원이내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250만원이내
-빈집정비지원: 150만원이내 -자동차번호판변경비용: 1/2지원이내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2매이내 -문화예술관람권: 2장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 129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민원봉사실, 행정과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농촌진흥과, 평생교육센터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9. 21.~10. 1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3): 의령, 함양, 남해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419호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 변호사의 운영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수행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3. 법령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5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을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을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공무원 방어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사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변호(고문변호사 여부 가리지 않는다)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변호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사건의 경우 소제기 당시,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

2. 민사사건의 경우 청구포기, 각하 또는 기각으로 확정되었을 것

3. 형사사건

가. 불기소처분 될 경우에는 사유가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로 확정되었을 것
나.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무죄판결로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선임계약서 사본

3. 변호사선임료 지급 증명서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경우

2.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보험사 그 밖의 제3자로부터 방어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 변호사의 운영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3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수행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3. 법령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입할 수 없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른 ----- -----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범위-----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7조(공무원 방어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변호(고문 변호사 여부 가리지 않는다)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변호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사건의 경우 소제기 당시,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 2. 민사사건의 경우 청구포기, 각하 또는 기각으로 확정되었을 것 3. 형사사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불기소처분 될 경우에는 사유가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로 확정되었을 것 나.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무죄판결로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을 것 <p>③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선임계약서 사본 3. 변호사선임료 지급 증명서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p>④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경우 2.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보험사 그 밖의 제3자로부터 방어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p>⑤ 제4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p>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7조(공무원 방어비용 지원):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사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변호비용으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산 5백만원으로 연 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11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군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 제기된 형사 또는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소신 있는 업무 추진과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 공무원노조 요청사항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나.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에 법무법인 추가함(안 제2조)

○ 변호사 ⇒ 변호사 및 법무법인

다. 적법한 공무수행 중 제기된 민사 및 형사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방어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지원 대상·절차·액수·요건, 반납 기준

라. 용어순화 및 문장정비 함.(안 제2조·제3조·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 5백만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8. 16.~9.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6): 창원, 거제, 사천, 함안, 함양, 합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420호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제11조제1항 및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6조(「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7조(「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8조(「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9조(「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1조(「거창군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발행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의 개정)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스포츠마케팅”을 “기금관련”으로 하고, 제8조제4항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3조(「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주민생활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건설교통과”를 “경제교통과”로 한다.

제14조(「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7~11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 조례에서는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나 군 행정기구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17.7.26.)되어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와 군 조직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명칭 변경함(안 제1조~제11조)

- 11개 조례 16건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방방재청 ⇒ 소방청
- 산업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교유과학기술부 ⇒ 교육부
- 내무부 ⇒ 행정안전부

나. 군 조직개편 사항 반영함(안 제12조·제13조)

- 3개 조례 6건
- 시설관리사업소 ⇒ 체육시설사업소
- 주민생활지원실 ⇒ 복지정책과
- 건설교통과 ⇒ 경제교통과
- 문화관광과 ⇒ 평생교육센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부조직법」 제25조, 제26조, 제3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부서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9. 7.~9.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현황: 입법예고(창원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421호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를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회”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중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두고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의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목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을 “(현장조사 등)”으로 하고 “위원회는”을 “위원회의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군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민원봉사과장</u>, 도시건축과장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④ (생략)</p>	<p><u>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삭 제></p> <p>제3조(구성) ① 「<u>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 제9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② ----- ----- ③ ----- ----- ----- 1. <u>민원봉사실장</u>, ----- 2. -----</p> <p><삭 제></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략)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제8조(간사) ----- -----두고,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제10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간 기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 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0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의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u>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u>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11조(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u> ----- ----- ----- ----- ----- -----</p> <p><u><삭 제></u></p> <p><u>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12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위임법명을 변경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3조)

- 민원봉사과장 ⇒ 민원봉사실장

다. 위원의 해촉 사유 구체화함(안 제4조제2항)

라.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함(안 제10조)

마.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의2,
제88조~96조,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8. 17.~9.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현황

○ 개정완료(9): 창원시, 통영시, 진주시, 거제시, 김해시, 남해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422호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위촉해제 및 임기) 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거창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마을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세무 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마을세무사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재무과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 공무원을 「거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로, 상담실적은 매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팩스·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도지사가 마을세무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군수가 위촉한 것으로 본다.

위 촉 장

제 - 호

위 촉 장

세무사 ○ ○ ○

귀하를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거창군 마을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년 월 일

거창군수 ○ ○ ○

직인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구 분	상 담 내 용(건)					상 담 방 법(건)				
	계	국 세	지방세	국 세 및 지방세	불복 청구	계	전화	방문	메일	팩스
년 분기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마을세무사 재능기부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에 포함하여 안내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243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에게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그 밖의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중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

접수번호	세무상담기록카드			접수일
No.				. . .
상담 종류 (V표시)	◦ 국세 상담 () ◦ 지방세 상담 () ◦ 지방세 불복 ()	상담 방법 (V표시)	◦ 방문 상담 () ◦ 팩스 상담 () ◦ 전화 상담 () ◦ 메일 상담 ()	
신청인	면동명			
	성명			
	연락처			
상담내용				
상담의견				
※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거창군 마을세무사				(인)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7~94
----------	---------

발의연월일	2017. 10. 23.
발 의 자	권재경, 이흥희, 변상원, 최광열, 김향란, 표주숙, 강철우, 박희순, 이성복, 의원 (9인)

1. 제안이유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세무사 위촉, 위촉해제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위촉·위촉해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마을세무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상담방법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 마. 포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 바.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거창군 포상 조례」 제2조, 제5조
-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반영 검토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재무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0. 26.~10.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제정현황(4):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423호

거창군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에 대하여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이나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5.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6.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7. “건설기계 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경비를 말한다.
8. “체불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등”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10. “수급인”이란 군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란 군이 도급을 받은 자에게 공사나 용역 대금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임금 합의서 등 확인) 공사감독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이하 “임금합의서”라 한다) 등을 확인하여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대금 지급의 사전통지) 군수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공사나 용역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 계획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군수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5천만원 이상인 모든 관급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군수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 군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7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등과 저가하도급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등의 상담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군수는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건설업협회와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고지의 의무) 군수는 관급공사 계약 시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사의 종류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 내용	공사의 종류			
	하도급 내용	도 급 액: 하도급액: 하도급률: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도급(하도급 포함)계약을 할 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노무비 전용 통장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수급인
제1조(근거) 이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 절차) 지방계약 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합의서에 규정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 통장)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 통장을 변경할 때에는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하수급 업체는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남은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수급인(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명세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거짓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거창군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인)

[별지 제2호서식]

임금 지급 및 청구 명세서 건설기계 임대료

○ 공사명:

계약상대자	월별	구분	성명(근로자, 소유자)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	서명
소계								
하도급사1	월별	구분	성명(근로자, 소유자)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	서명
소계								
하도급사2	월별	구분	성명(근로자, 소유자)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	서명
소계								
합계								

- ※ 1. 구분: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의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명자료 첨부)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감리원			(인)	

거창군 (분임)재무관 귀하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12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의무부담 조항을 삭제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 법제처와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2. 주요내용

가.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

- 관급공사에 대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등 의무 부과 조항 삭제(구 제4조제4항·제5항)
- 임금지급 현황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할 경우 부진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여 새로운 규제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구 제11조)

나. 계약대상자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구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 제12조)

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신설함(안 제6조)

라. 문장 정비 및 용어 순화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9. 15.~10. 10.

-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현황
 - 완료(5): 진주, 사천, 산청, 함양, 합천
- (7) 법제처 컨설팅사례 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424호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조요청)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위원수당: 630천원(7만원*30명*3회)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이 건 호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안 번호	2017~12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재난 안전 강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를 정함.(안 제3조~제6조)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라. 위원회 운영을 정함.(안 제7조)

○ 회의개최: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소집요청 시

○ 의결정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마. 협조요청 및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18년 예산 630천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9. 12.~10.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조례 제정현황

○ 제정완료(6): 거제시, 창원시, 김해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 입법예고(5): 통영시, 의령군, 합천군, 함안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425호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역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5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12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해당 시설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으로 까지 확대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조례 규제개선 50선 정비

2. 주요내용

가.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제설·제빙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 (현행)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추가) 시설물의 지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 개정사항 반영('14.12.30.)

다. 제설·제빙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라. 제설·제빙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 시설물의 지붕 제설·제빙 방법, 작업 중지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

마. 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비치해야 할 제설·제빙 도구를 명시하고,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9. 28.~10.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 창원시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426호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그 도로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공사 개시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 등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등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위한

공사 등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공사 등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제외한다.

1. 직접파손부분(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공사비

2. 간접파손부분(직접파손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공사비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납입한 원인자부담금 전부

2.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줄어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공사가 완료된 경우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도로공사 굴착 표준 최적 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기준(제3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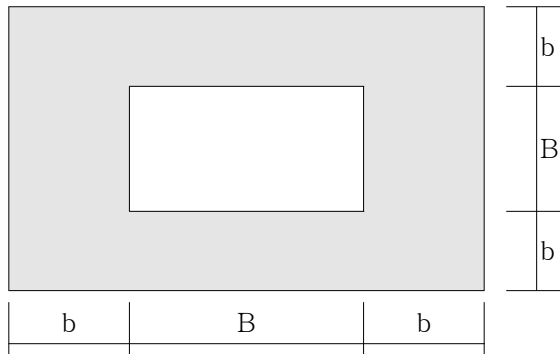
1. 표준 최적 기울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파손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분	차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0.7미터×0.7미터	0.8미터×0.8미터	0.7미터×0.7미터
최소굴착폭	0.7미터	0.8미터	0.7미터
간접파손영향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미터 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미터 구간 (굴착 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미터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미터 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5분의1까지 범위 (굴착 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 시는 0.3미터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 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정하여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3미터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미터 구간 ·보도·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봇대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제곱미터(1.5미터×1.5미터) ※ 이 경우 굴착면적은 1미터×1미터로 계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만, 각종 전봇대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도·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구비용	직접	직접파손부분 복구비	직접파손부분 복구비
	간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스팔트포장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손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센티미터)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센티미터) 비용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센티미터)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3. 굴착폭(B), 간접파손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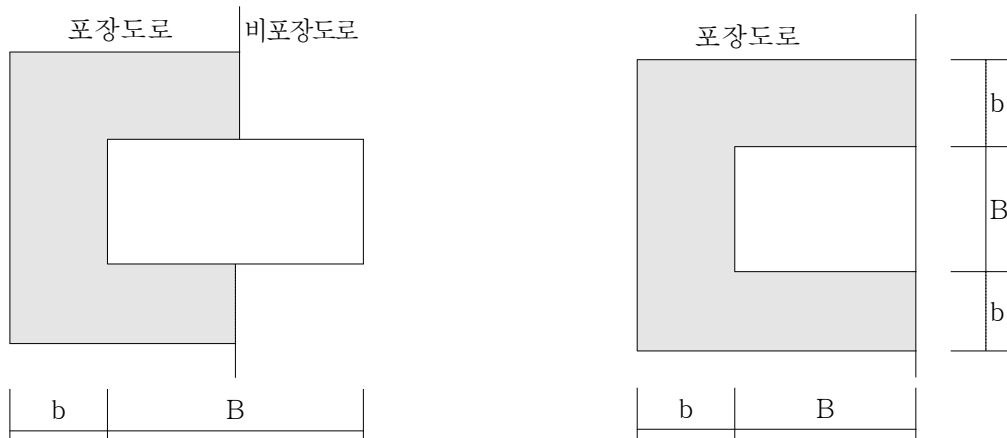
가. 굴착폭(B) 및 간접파손영향(b)

1) 표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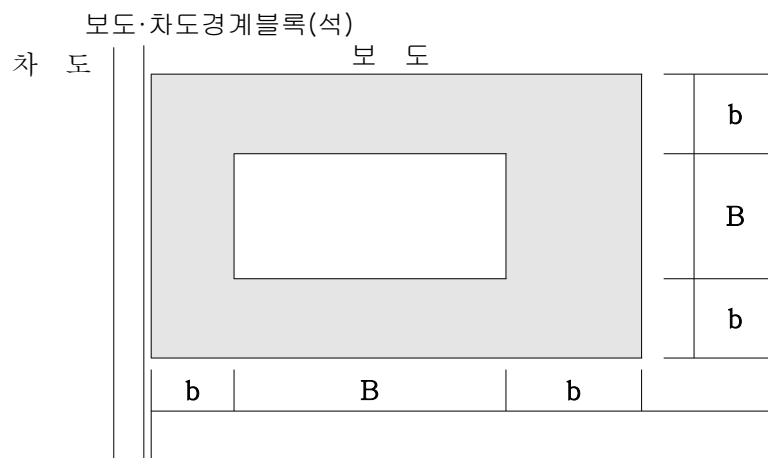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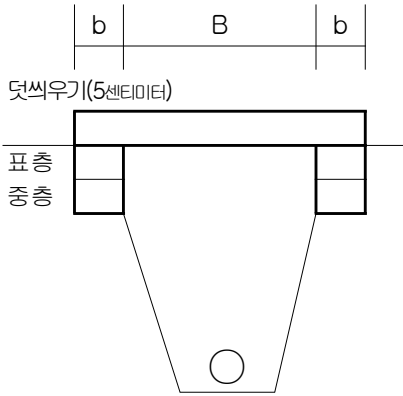
3) 보도·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보도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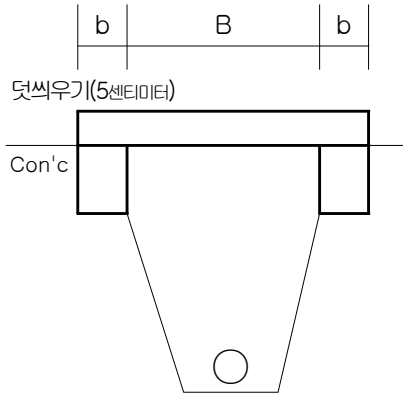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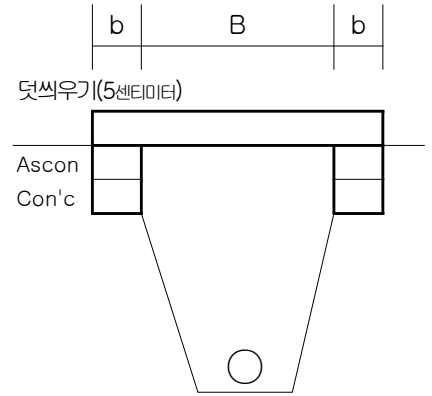
가) 아스팔트



나)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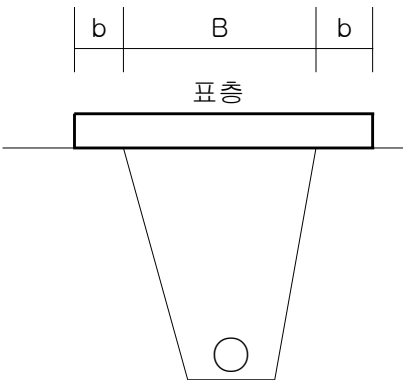


다) 아스팔트덧씌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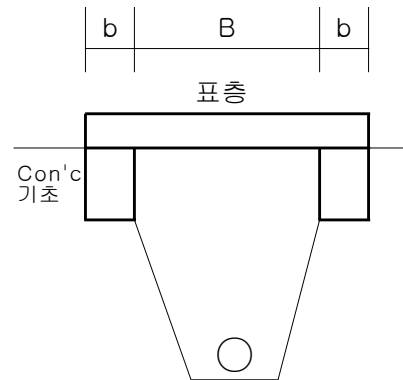


2)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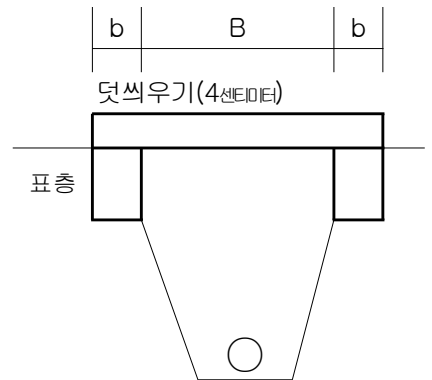
가) 블록류



나) 화강석류



다)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가.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나.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남은 보도폭 합계가 1미터 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파손부분 복구비 및 직접파손부분을 제외한 남은 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다.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파손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라. 둘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 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 시 간접파손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마.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 보도·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별표 2]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제3조제2항 관련)

종 별	부 호	적 용 단 면	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1	표층: 5센티미터 중기층: 15센티미터 보조기층: 20센티미터 기층: 40센티미터	폭 20미터 이상 도로	
	A-2	표층: 5센티미터 중기층: 7.5센티미터 보조기층: 20센티미터 기층: 30센티미터	폭 20미터 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C-1	표층: 20센티미터 보조기층: 20센티미터	폭 6미터 이상 도로	
	C-2	표층: 15센티미터 보조기층: 15센티미터	폭 6미터 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	CA-1	표층 (아스콘): 5센티미터 표층 (콘크리트): 20센티미터 보조기층: 20센티미터	폭 6미터 이상 도로	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CA-2	표층 (아스콘): 5센티미터 표층 (콘크리트): 15센티미터 보조기층: 15센티미터	폭 6미터 미만 도로	
보 도	일반보도블록	일반보도블록 표층: 6센티미터 모래: 4센티미터 보조기층: 10센티미터	다만,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소형고압블록	소형고압블록 표층: 6센티미터 모래: 4센티미터 보조기층: 10센티미터		
	화강석	표층: 3~5센티미터 몰탈 (1:3): 4센티미터 콘크리트기초: 10센티미터 보조기층: 10센티미터		
	투수성아스콘	투수성아스콘 표층: 4센티미터 기층: 10센티미터 모래: 5센티미터		
	그 밖의 사항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블록포장	보도블록표층: 8센티미터 모래: 3센티미터 콘크리트기초: 10센티미터 보조기층: 15센티미터	다만, 기울기가 10분의1 이상 구간은 모래(3센티미터) 대신 불임모르터(4센티미터) 적용	
	아스팔트포장	표층 (아스콘): 5센티미터 기층 (콘크리트): 15센티미터	기층은 와이어 메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콘크리트포장	표층 (콘크리트): 15센티미터 기층 (골재): 15센티미터	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그 밖의 사항	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		
비포장도로		군수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 도로		
그 밖의 도로 시설물	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 양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케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12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으로 손케자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과된 사례가 없고, 기존의 원인자부담금제도로 보완이 가능하여 손케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손케자부담금 조항 삭제.(구 제4조·제5조)
- 나. 원인자부담금 선납규정을 공사 개시 전 납부로 규제 완화.(안 제2조)
- 다. 원인자부담금 반환사유 및 금액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91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9. 29.~10. 18.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16개):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도로점
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427호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66조”를 “「도로법」 제66조제4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제2항 중 “각 호에 해당”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으로 “점용료”를 “농어촌도로 점용료”로 한다.

제5조 중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영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과오납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농어촌도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p> <p>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생략) ② 군수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③ (생략)</p> <p>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p>	<p>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p> <p>제1조(목적) ----- 「도로법」 제66조 제4항----- -----필요한-----</p> <p><삭 제></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u>농어촌 도로 점용료</u>----- -----<u>농어촌도로 점용료</u>----- -----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점용료의 조정) <u>농어촌도로</u>---</p>

<p>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영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p>
<p>제6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 감면은 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른다.</p>	<p><삭 제></p>
<p><신 설></p>	<p>제6조(과오납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농어촌도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산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미터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400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850
		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1,250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1,650
		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2,050
		지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3,100
		지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5,200
		지름 3.0미터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압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미터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600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1,250
		미터지름 0.4미터초과 0.6m이하			1,850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2,500
		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3,100
		미터지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4,600
		지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7,750
		지름 3.0미터 초과			10,850
3. 주유소·주차장·여객차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 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 에 이와 유사 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 하실(「건축 법」 제2조 제1항제2호 에 따른 건 축 물 로 서 「국토의 계 획 및 이용 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61조제1 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 우만 해당한 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 판은 제외한 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관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 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 →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12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완화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개 연도 이상 도로 점용 시 점용료 조정산식 완화함(안 제5조)

(현행) 「도로법 시행령」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

(변경)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

나. 법령 중복 재기재 사항 삭제함(안 제2조, 제6조)

○ 점용료 부과대상, 점용료 감면

※근거: 도로법」 제61조제2항·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제1항·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다. 과오납된 농어촌도로 점용료 반환규정 신설함(안 제6조)

라. 그 밖에 의미를 명확히 하고 용어 순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6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71조·제74조·별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제19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9. 29.~10.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11개):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고성, 산청, 합천, 함양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428호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를 정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4.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관광과장, 거창읍장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옥외광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옥외

광고정비기금 및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로 본다.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12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상위법령 위반사항 및 중복·재기재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함(안 제명 및 제2조·제4조)

- 제명: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위원회 명칭: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나.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구 조례 제2조,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제5조제1호~제3호, 제10조~제13조)

-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위원회의 기능
- 기금운용계획, 회계관계공무원
- 기금의 결산, 관계규정의 준용 등

다.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의 위임취지에 맞게 정비(안 제2조)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부합되게 위원 구성 정비함(안 제4조)

-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규정 신설

마.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상 필요한 사항 신설함(안 제5조·제6조)

-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바. 위원회·기금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종전의 위원회·기금 명칭을 개정 조례에 따른 위원회·기금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 신설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 4,600천원

- 기금 운영비: 4,600천원(사무관리비 2,800, 보상금 1,800)

※ 기금 예치금: 276,867천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9. 22.~10. 1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경남도내 조례개정 현황

○ 개정완료: 김해, 남해, 고성, 창원, 창녕, 거제, 함안, 진주, 양산

○ 개정 중: 의령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429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p>②~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p>②~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p>

현 행	개 정 안
<p>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종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12. ----- ----- ----- 13. ----- ----- ----- 14. ----- 15. ----- 16. ----- 17. ----- 18. ----- 19. ----- ----- ----- 20. ----- 21. -----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p>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 관련)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호 가목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세차 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127	제 출 자	거창군수
----------	----------	-------	------

1. 제안이유

법령위임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효율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완화 과제정비

2. 주요내용

가.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율 완화(안 제53조제6항·제58조제3항)

- 기존에 정한 건폐율·용적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 다만 법 제77조·제78조에서 정한 건폐율·용적율의 최대한도 초과할 수 없음

나. 상업지역(중심, 일반, 유통)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완화 (안 별표 7, 별표 8, 별표 10)

-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 경계 완화

다.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내 공동주택 면적 비율 규제 완화(안 별표 7~별표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제1호나목, 별표 9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라 적용, 조례로 위임되어 정한 규제 강화 부분 삭제함.

- (현행) 70퍼센트 ⇒ (변경) 90퍼센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별표 11
-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17.10.16./원안의결)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9. 22.~10. 1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7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430호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이란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 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조성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 마련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의안 번호	2017~95
----------	---------

발의연월일	2017. 10. 23.
발 의 자	최광열, 이흥희, 권재경, 김향란, 표주숙, 강철우, 변상원 의원 (7인)

1. 제안이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5조)
-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준,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 라.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도시건축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10. 26.~10. 30.
 - (나) 예고결과: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제정현황(7): 김해,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양산, 고성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4에이치
육성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7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431호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거창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 4에이치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국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의안 번호	2017~96
----------	---------

발의일자	2017. 10. 23.
발 의 자	이성복, 김종두, 표주숙, 이흥희, 강철우, 박희순, 의원 (6인)

1. 제안이유

거창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4에이치활동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안 제2조)
- 나. 군수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정함.(안 제3조)
- 다.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4조)
- 라.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 제5조 등
-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반영에 검토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0. 26.~10.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제정현황(2): 경상남도, 사천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11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432호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기획감사실-11352호(2016.08.23.)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경비 통보」에 근거하여(위원회 참석수당 70천원)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민간위원 11명을 대상, 분기 1회(총 4회) 회의 추진 시 연 3,080천원의 비용이 필요함.

4. 작 성 자 수도사업소장 박 종 권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12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법령위배 소지가 있는 규정과 법령 재기재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삭제함(구 제2조·제3조·제8조)

-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 위원 수, 위원 자격
- 수질검사 실시 횟수, 실시 기관 등

나. 위원의 임기 중 연임 제한 규정 신설함(안 제3조)

다. 수질검사 공표방법 및 공표 시 포함사항 삭제함(구 제9조·제10조)

-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과 별개의 사항이므로 삭제

라.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순서 조정함(안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30조,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

나. 예산조치: 2017년 예산 3,080천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9. 22.~10. 1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4):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창녕군
-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11월 29일

거창군 규칙 제1233호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제1조(「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121조제3항, 제141조, 제150조제2항,
제158조,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별표 4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거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거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 제15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1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제26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거창군 공무국외여행규칙」의 개정) 거창군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
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조(「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
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재난관리과”를 “건설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의안 번호	2017~86
----------	---------

제출일자	2017. 10. 16.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제안 이유

- 규칙에서는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나 군 행정기구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17.7.26.)되어 행정자치부 등 주요 정부 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규칙과 군 조직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입법 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2. 주요내용

가. 규칙에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명칭 변경함(안 제1조~제7조)

- 7개 규칙 19건
-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군 조직개편 사항 반영함(안 제8조)

- 1개 규칙 2건
- 재난관리과 ⇒ 건설과
- 시설관리사업소 ⇒ 복지정책과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정부조직법」 제25조, 제26조, 제34조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합 의: 해당 부서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9.7.~9.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현황: 입법예고(창원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11월 29일

거창군 규칙 제1234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경남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 지원) ①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을 결정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지원 금액, 업종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유치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시설보조금) ① (생략)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u>공장 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u>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의 지급범위는 기업이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0조(시설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u>별지 제5호서식</u>----- ----- ----- ----- ----- ----- -----</p> <p>제11조의2(경남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 지원) ①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을 결정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지원 금액, 업종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p>
<p>제22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도내 유치금액이 건당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② <u>제1항에 따른 포상은 투자유치기업이 군수와 입주계약 또는 투자유치협약 등을 체결한 이후에 행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2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① - ----- -----</p> <p>1. ----- ----- -----</p> <p>2. ----- ----- -----</p> <p><삭 제></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기준은 <u>별표와 같다.</u> ③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u>투자유치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u></p>

현 행	개 정 안
<p>③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p>	<p><u>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 ----- ----- ----- -----</p>

【별표】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일반인(개인·단체·기관·기업 포함)

투자유치금액	지급기준율	상한액
20억원~100억원	투자금액×0.001	1,000만원
100억원~500억원	1,000만원+ (투자금액-100억원)×0.0004	2,600만원
500억원~1,000억원	2,500만원+ (투자금액-500억원)×0.0003	4,000만원
1,000억원 초과	5,000만원+ (투자금액-1,000억원)×0.0002	2억원

공무원

투자유치금액	지급기준율	상한액
20억원~100억원	투자금액×0.0002	200만원
100억원~500억원	200만원+ (투자금액-100억원)×0.00004	350만원
500억원~1,000억원	350만원+ (투자금액-500억원)×0.00003	500만원
1,000억원 초과	500만원+ (투자금액-1,000억원)×0.00002	2,000만원

※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시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협회 또는 단체명			전화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유치기업 현황

구분	기업명	소재지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제곱미터)	종업원수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현소재지					
이전지역					

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

계	부지매입비	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			
		건축비	공작물	기계설비	부속시설등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성명	성별	소속	직위(직급)	기여도 (퍼센트)	기여내용	확인
	(남/여)					(인)
	(남/여)					(인)
	(남/여)					(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포상금 지급 신청서							
외국투자자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남/여)		
외국인투자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	만원 (USD 상당)(퍼센트)					
	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	만원 (USD 상당)(도착일 :)					
투자방법	<input type="checkbox"/> 신 규 <input type="checkbox"/> 증 자						
투자유형	<input type="checkbox"/> 단 독 <input type="checkbox"/> 합 작(퍼센트)						
투자위치							
질적평가	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소 속	직위(급)	성 명	성별	기여내용	기여도(퍼센트)	확인
				(남/여)			(인)
				(남/여)			(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div>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그 밖의 투자유치 관련 증명서류 1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경남도 조례 균형발전 대상지역에 보조금을 2배의 범위에서 확대 지원함에 따라 그 사항을 규칙에 반영함.
-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 관련조문

- 제11조의2(경남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 지원)
- 제22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a - b)							
세출	국비						
	도비	400	1200	1,200	1,200	1,200	5,200
	군비	100	310	310	310	310	1,340
	소계(a)	500	1,510	1,510	1,510	1,510	6,540

3. 관련 의견

- 경남도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 한도액 확대 지원 사항과,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유치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 연1,500백만원(도비80%, 군비20%)
-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12백만원(군비)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7~88
----------	---------

제출일자	2017. 10. 16.
제 출 자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경상남도가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에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기업유치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군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남도가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에 보조금을 2배 확대함에 따라 그에 맞춰 보조금 지원한도액 확대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근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나. 포상금 지급기준 구체화함(안 제22조제2항·제3항, 별표)

○ 지급상한액: 민간인 2억원, 공무원 2천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1조, 제27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나. 예산 조치: '18년도 예산 500백만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8. 25.~9.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1): 양산시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
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11월 29일

거창군 규칙 제1235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전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거창월성창의과학관의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소년지도사의 휴무일)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휴관일) ①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휴관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p> <p>②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다음날), 1월 1일, 설·추석연휴에 휴관한다.</p> <p>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시에는 임시로 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3일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조(휴관일) ①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거창군 청소년문화의 집,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의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p> <p><삭 제></p> <p>② -----제1항-----</p> <p>-----</p> <p>-----</p> <p>-----</p> <p>-----</p>
<p><신 설></p>	<p>제5조의2(청소년지도사의 휴무일)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p>
<p>제8조(위탁운영) ①~② (생략)</p> <p>③ 군수는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 할 수 있다.</p>	<p>제8조(위탁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9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삭 제></p>

[별표] 청소년활동시설의 휴관일

시 설 명	휴 관 일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거창군 청소년문화의 집		매 주 월요일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다음날), 1월 1일, 설·추석연휴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7~93
----------	---------

제출연월일	2017. 10. 16.
제 출 자	평생교육센터소장

1. 개정이유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지도사의 배치와 운영의 효율성 증진하고, 그 밖에 규칙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창군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을 확대함(안 제5조, 별표)

(현행)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추가) 매주 월요일

나.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활동지도사 휴무일 신설함(안 제5조의2)

○ 매주 월요일

다. 법령 재기재 또는 법령 위배소지 규정 삭제함(안 제8조제3항, 제9조)

- 공유재산 위탁기간: 5년 이내임에도 4년 이내로 규정되어있어 삭제
- 보험가입: 법령 재기재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25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9.18.~10.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9):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고성군, 창녕군, 함안군, 합천군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17년 11월 29일

거창군 훈령 제417호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 채용계획 수립 전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 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전심사 결과의 범위에서 예산 부서의 장의 협의를 받아 근로자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 중 직제개편, 해당 업무의 중지·종료, 업무량의 축소 등의 사유로 사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채용 전 조정사유, 사용 인원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관리부서 및 예산부서의 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1년”을 “9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외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간제근로자의 인원·예산 관리)</p> <p>①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8월 말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분야, 사용인원,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이하 “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중 직제개편, 해당 업무의 중지·종료, 업무량의 축소 등의 사유로 사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전 조정사유, 사용인원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의 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p>	<p>제5조(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p> <p>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 채용 계획 수립 전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전심사 결과의 범위에서 예산부서의 장의 협의를 받아 근로자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 중 직제개편, 해당 업무의 중지·종료, 업무량의 축소 등의 사유로 사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채용 전 조정사유, 사용인원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관리부서 및 예산부서의 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p>
<p>제7조(채용절차) ① 관리부서의 장은 1년 이상 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p> <p>② 근로기간 1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일시·간헐적 업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6개월 미만의 근로자 채용 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7조(채용절차) ① ----- 9개월 ----- ----- ----- -----</p> <p>② ----- ----- -----</p> <p>--- <단서 삭제></p>

표준 근로계약서(안)

거창군수(이하 “사용자”라 함)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업무 내용: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일반적인 출퇴근의 경우

○ 근로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매주 부터 까지로 한다. 다만 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임 금

- 보수는 일급, 조정수당, 복리후생비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 임금은 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임금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예금계좌번호 : _____)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기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사용자) 주 소: _____ (전화: _____)
 기관명: _____
 대표자: _____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_____ (전화: _____)
 생년월일: _____
 성 명: 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사전심사 청구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
-----	--	-----	------

□ 채용 개요

- 사역기간: ~
- 근로장소:
- 채용인원:
- 관리책임
 - (정) 직위: 성명:
 - (부) 직위: 성명:

□ 소요예산

- 예산액: 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100퍼센트)	(퍼센트)	(퍼센트)	(퍼센트)

- 산출근거:

□ 채용 필요성

- 채용목적:
- 업무:
- 채용담당 직급별 정·현원 (00.00.00.현재)

구분	계	6급	7급	8급	9급	그 밖의 직
정원						
현원						
과부족						

※ 업무 분장표 별첨

□ 업무량

○ 일일 업무량(시간별 작성)

시 간		업 무	실적증명	비고
09:00-10:00	60'			
...				

○ 주간 업무량(일별 작성)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업무					

○ 연간 업무량(월별 작성)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목표: ○○달성					

□ 관리방안(사업종료 후 증빙서류 제출)

○ 근태 관리계획

- 근무시간

- 초과근무

· 일 수:

· 사 유:

거창군 고시 제2017-145호

삼봉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2012년 착수한 삼봉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수립(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 월 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삼봉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2. 사업의 목적 : 삼봉산권역의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조성 등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삼봉산권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3. 면 적 : 2,290ha (농경지: 1,152ha, 기타: 1,138ha)
4. 가구 / 인구 : 293호(농가: 244호, 비농가: 49호), 인구 649명
5. 사 업 비 : 5,684백만원(국비: 3,978백만원, 지방비: 1,706백만원)
(자부담: 당초 - 363백만원, 변경 - 349백만원)
6. 사 업 기 간 : 2012년 1월 ~ 2017년 12월
7. 시 행 자 : 거창군 (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8. 사업(변경)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다목적센터, 구송마을 정자, 용초마을회관 외)
 - 다목적센터 조경변경 및 막구조물 설치 외, 구송마을 정자조성사업 취소 등
 - 지역경관개선사업(수목식재 및 산책로 정비 외)
 - 산책로 조성 위치변경 및 조경식재 변경, 전망데크 설치 등
 - 소득사업(사과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 변경없음
9.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 농촌개발담당
(☎940-8257)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붙임 : 수용 · 사용 할 토지 세목조서 1부. 끝.

○ 수용 ·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순번	군	면	리	지 번	지목	지적 (㎡)	공부상 소유자	
							주 소	성 명
1	거창	고제	봉계	86	답	83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2	거창	고제	봉계	87	답	1,084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3	거창	고제	봉계	89	답	2,314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4	거창	고제	봉계	85-1	답	2,471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5	거창	고제	봉계	90-2	답	24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6	거창	고제	봉계	90-7	답	538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7	거창	고제	봉계	1465-2	전	27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8	거창	고제	봉계	88	답	182	농산리	미등기 (토지대장 소유자 김호균)
총계						6,968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밭작물 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		사 업 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북상면 산수리 산23-4	9,685㎡	2,658㎡	55,000천원	2017. 11. 27. ~ 2019. 7. 31.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길 16	김 선 곤

3. 사업효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7년 11월 27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고시 제2017 - 147호

거창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결정(변경),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4-47(2014.05.12)호로 실시계획인가한 거창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6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결정(변경) 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1. 30.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3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 명 칭 : 거창군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화물차고지 결정면적 (㎡)	금회사업 면적 (㎡)	비 고
유통업무설비	당초 22,511 변경 22,307	당초18,611 변경18,407	○ 주차장 : 당초 18,611㎡, 변경 18,407㎡ ○ 주차관리사무소: 1개소(연면적 134.08㎡)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4. 05. 12 ~ 2017.12.31.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

세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위치	분할후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 류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거창읍 대평리	1341-6	답	610	610		거창군			
2	거창읍 대평리	1335-2	답	916	916		거창군			
3	거창읍 대평리	1334	답	1,025	1,025		거창군			
4	거창읍 대평리	1341-5	답	680	680		거창군			
5	거창읍 대평리	1331	답	2,076	2,076		거창군			
6	거창읍 대평리	1327-4	답	3,039	3,039		윤옥자			
7	거창읍 대평리	1339-7	답	685	685		윤옥자			
8	거창읍 대평리	1340-5	답	1,053	1,053		윤옥자			
9	거창읍 대평리	1340-6	답	1,745	1,745		차세운			
10	거창읍 대평리	981-3	답	12	12		거창군			
11	거창읍 대평리	981-5	답	443	443		거창군			
12	거창읍 대평리	1318-5	답	941	941		거창군			
13	거창읍 대평리	1004-5	답	969	969		거창군			
14	거창읍 대평리	543-20	구	366	366		거창군			
15	거창읍 대평리	543-21	구	1	1		거창군			
16	거창읍 대평리	980-5	답	15	15		거창군			
17	거창읍 대평리	980-6	답	6	6		거창군			
18	거창읍 대평리	1003-12	답	254	254		거창군			
19	거창읍	1003-14	답	5	5		거창군			

일련 번호	위치	분할후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 류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대평리									
20	거창읍 대평리	1003-13	답	982	982		거창군			
21	거창읍 대평리	1003-15	답	8	8		거창군			
22	거창읍 대평리	1327-5	도	293	293		거창군			
23	거창읍 대평리	998-10	답	1,339	1,339		거창군			
24	거창읍 대평리	998-12	답	34	34		거창군			
25	거창읍 대평리	998-9	답	514	514		거창군			
26	거창읍 대평리	998-11	답	21	21		거창군			
27	거창읍 대평리	997-7	답	352	352		거창군			
28	거창읍 대평리	997-9	답	23	23		거창군			
합 계	분할 전			37,013	18,611					
	분할 후			18,407	18,407					

□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결정(변경)

(1)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1	유통 업무설비	거창읍 대평리 1347일원	94,567	-	94,567	거고43호 (’08.9.17)	일반공업 지 역

(2) 유통업무설비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세 부 시 설 명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4,567	-	94,567	100.0	
유통 시 설	소 계		73,087	감)204	72,883	77.2	
	①	집 배 송 센 터	4,416	-	4,416	4.7	물류시설
	②	화 물 자 동 차 공 영 차 고 지	22,511	감)204	22,307	23.6	물류시설
	③	저 온 저 장 시 설 및 기 타	11,700	-	11,700	12.4	물류시설
	④	선 별 포 장 시 설 및 부 속 시 설	26,340	-	26,340	27.8	상류시설
	④-1	선 별 포 장 및 부 속 시 설 2	3,210	-	3,210	3.4	상류시설
	⑤	일 반 창 고 타 및 기 타	3,202	-	3,202	3.4	물류시설
	⑥	부 대 시 설 및 편 익 시 설	1,708	-	1,708	1.8	상류시설
지 원 시 설	소 계		1,910	-	1,910	2.0	
	⑦	사무 지원 시설	-	-	-	-	
	⑧	주 차 장	1,910	-	1,910	2.0	
공 공 시 설	소 계		19,570	204	19,774	20.8	
	-	도 로	11,086	-	11,086	11.7	
	-	구 거	37	204	241	0.3	
	-	녹 지	7,537	-	7,537	7.9	
	⑨	오 수 처 리 시 설	910	-	910	1.0	

주) 기정 :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거고2016-126호[2016. 12. 15])

■ 조성계획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통 업무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시설 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 22,511㎡ → 22,307㎡(감204㎡) 구거 : 37㎡ → 204㎡(증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지적 분할 측량에 따른 측량 면적 반영

2) 단지내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단지내 도로	중로	1	A	20	국지 도로	275	대1-11	중3-9	일반 도로	유통업무 설비	-	
단지내 도로	중로	2	B	15	국지 도로	320	대1-12	중1-A	일반 도로	유통업무 설비	-	

“끝”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29.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1길 134 외 12건(부여 9건, 폐지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1520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669	20090702	2017-11-29	거창군 거창읍과 함양군 안의면을 연결하는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80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주곡로 147-21	20091228	2017-11-29	주상면의 옛지명이 반영 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22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93-7	20090401	2017-11-29	강남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거리 63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고대길 171-8	20090401	2017-11-29	고대라는 사람이 마을을 열었다고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36-1, 37-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6길 26	20090401	2017-11-29	상동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여섯번째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970-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2길 56	20090401	2017-11-29	마을 앞의 큰 돌 그늘이 마을에 이르러 음석이라 부르다가 뜻이 좋지 않다하여 양평으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96-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5길 3-20	20090401	2017-11-29	창남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다섯번째 도로	
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21-1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하동1길 46-12	20090401	2017-11-29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천내의 아림교 동쪽의 마을에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19-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1길 134	20160420	2017-11-29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 도로명주소폐지

일련 번호	폐지도로명주소	고 시 일		폐지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2길 53-7	2009-04-01	2011-11-29	건물철거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6길 28	2009-04-01	2011-11-29	건물철거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7길 83-12	2009-04-01	2011-11-29	건물철거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길 49-3	2009-04-01	2011-11-29	건물철거	

거창군 공고 제2017 - 1250호

도 시 계 획 시 설(교통시설:소로2 - 102호선) 실 시 계 획 (변경) 인 가 를 위 한 공 고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02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²)	시 점	종 점		
교통 시설	당 초 가지리 교촌마을 (소2-10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창읍	가지	소로	2	102	220	8	2092	거창읍 가지리 299-1	거창읍 가지리 103-10	경상남도 고시 1978-103호 ('78. 3. 20)	2016. 12. 26 ~ 2018. 12. 31
	변 경 가지리 교촌마을 (소2-10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창읍	대동	소로	2	102	220	8	1998m ²	거창읍 가지리 299-1	거창읍 가지리 103-10	경상남도 고시 1978-103호 ('78. 3. 20)	2016. 12. 26 ~ 2018. 12. 31

2. 사업 시행자

가)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나) 성명 : 거창군수

3.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6)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 자		
	당초	합계		13,923	2,092						
	변경	합계		13,923	1,998						
1	당초	거창읍 가지리	299-1	도	49	11		거창군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299-1	도	49	11		거창군			
2	당초	거창읍 가지리	300-1	도	56	44		거창군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300-1	도	56	44		거창군			
3	당초	거창읍 가지리	301-2	대	205	65		이순례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301-2 (301-4)	대	46	46		거창군			
4	당초	거창읍 가지리	301-1	대	93	52		정권수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301-1	대	93	93		거창군			
5	당초	거창읍 가지리	302	대	60	35		이수룡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302	대	60	60		거창군			
6	당초	거창읍 가지리	1719-9	도	3,130	597		국 (건설부)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1719-9	도	3,130	597		국 (건설부)			
7	당초	거창읍 가지리	303	대	228	58		정해수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303 (303-1)	대	40	40		거창군			
8	당초	거창읍	292-3	대	288	97		경상남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 자	
		가지리					향교재단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292-3 (292-6)	대	105	105	거창군			
9	당초	거창읍 가지리	304	대	373	14	김수길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304	대	373	0	김수길			
10	당초	거창읍 가지리	292-2	대	20	4	명륜학원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292-2	대	20	18	덕봉학원			
11	당초	거창읍 가지리	292-2	대	20	4	명륜학원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292-2 (292-5)	대	2	2	덕봉학원			
12	당초	거창읍 가지리	304-1	도	34	34	김수길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304-1	도	14	14	거창군			
13	당초	거창읍 가지리	304-1 (304-3)	도	34	34	김수길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304-1 (304-3)	도	20	20	거창군			
14	당초	거창읍 가지리	292-1	대	40	2	경상남도 향교재단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292-1	대	38	38	거창군			
15	당초	거창읍 가지리	292-1	대	40	2	경상남도 향교재단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292-1 (292-4)	대	2	2	거창군			
16	당초	거창읍 가지리	305-1	대	215	89	이상학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305-1 (305-5)	대	72	72	거창군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 자		
17	당초	거창읍 가지리	289-2	대	360	3		윤수재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289-2 (289-3)	대	6	6		거창군			
18	당초	거창읍 가지리	305-2	대	94	5		박훈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305-2	대	94	0		박훈			
19	당초	거창읍 가지리	288-3	대	397	21		경상남도 향교재단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288-3 (288-6)	대	23	23		거창군			
20	당초	거창읍 가지리	305-3	대	38	35		박훈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305-3 (305-6)	대	25	25		박훈			
21	당초	거창읍 가지리	288-4	대	53	36		경상남도 향교재단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288-4	대	53	53		거창군			
22	당초	거창읍 가지리	287	대	192	2		최희자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287	대	192	0		최희자			
23	당초	거창읍 가지리	349-14	임	358	180		경상남도 향교재단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349-14 (349-20)	임	118	118		거창군			
24	당초	거창읍 가지리	349-9	임	1,521	310		경상남도 향교재단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349-9 (349-18)	임	270	270		거창군			
25	당초	거창읍 가지리	285	전	4,175	96		경상남도 향교재단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285 (285-1)	전	140	140		거창군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 자		
26	당초	거창읍 가지리	349-10	전	1,944	302		경상남도 향교재단			
	변경 (분할후)	거창읍 가지리	349-10 (349-19)	전	201	201		거창군			

6.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 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28.

거 창 군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17. 11. 28. ~ 2017. 11. 15.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구분		양도인	양수인
태양광 발전사업 (제2017- 83호)	발전소명	기광 태양광 발전소 (경남 거창군 2017-83호)	
	대 표 자	풍진섭	이민혜
	소 재 지	경남 통영시 해미당 4길 27 (북신동)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41-14, 102동1402호 (한선파리타운)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산122-5 (토지위)	
	설비용량	99.96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7. 11. 02.	
	양수(예정)일	2017. 11. 28.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거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함.(안 제2조)
- 나. 수리업체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마. 장애인 보장구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신청,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8조)

4. 입법예고기간: 2017. 11. 28. ~ 2017. 12. 02.(5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17. 12. 04.(화)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강철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17 ~ 146
----------	------------

발의일자	2017. 11. .
발 의 자	강철우, 이성복, 변상원, 이흥희, 권재경, 최광열, 형남현, 김종두, 표주숙, 김향란, 박희순 의원(11인)

1. 제안이유

- 거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함.(안 제2조)
- 나. 수리업체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마. 장애인 보장구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신청,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5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등
-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반영에 검토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11. . ~ . .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6) 도내 제정현황(3개소): 경상남도, 양산시, 남해군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하며,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지원금액은 연간 300,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하며, 전지 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 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그 밖에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불가피하거나 추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즉시 지정수리업체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여부
3. 수리비용의 지원기준금액 초과여부

③ 장애인보장구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달 말일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매달 수리 지원 대상자 내역을 제출받아 지정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

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등 지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등 지원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 상태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복e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등 지원 중복조회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지원받은 품목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지정 수리 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청구내용

청구기간		비용	
수리건수		청구금액	

수 리 내 역

연번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장애 유형	수급권자 여부	전화 번호	이동기기 유형	수리 일자	수리 (교체) 부위	수리비용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세금계산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

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활동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장구 급여 및 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7-27호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관내에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지원대상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다. 지원기준과 대상자 신청·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지원금 회수에 관한 규정(안 제6조)

4. 입법예고기간: 2017. 11. 28. ~ 2017. 12. 02.(5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17. 12. 04.(화)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형남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17-147
----------	----------

발의일자	2017. 11. .
발 의 자	형남현·박희순·강철우· 표주숙·이성복·변상원 의원(6인)

1. 제안이유

- 관내에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지원대상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다. 지원기준과 대상자 신청·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지원금 회수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반영에 검토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11. . ~ 12. .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제정완료: 없음

※ 전국 제정완료(14): 고창군, 순창군, 곡성군, 부안군, 해남군, 연천군, 경산시, 남원시, 나주시, 전주시, 서산시, 삼척시 등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거창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기준) ① 거창군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지원신청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노인복지법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생략)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2.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5조(등급판정 등) ①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개정 2016.5.29.>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1.]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3.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함.(안 제2조)
- 나.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9조)
- 다.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2조)
- 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21조)

마.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4. 입법예고기간: 2017. 11. 28. ~ 2017. 12. 02.(5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17. 12. 04.(화)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이성복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17-148
----------	----------

발의일자	2017. 11. .
발 의 자	이성복, 이흥희, 강철우, 표주숙, 권재경, 박희순, 김종두 의원(7인)

1. 제안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함.(안 제2조)
- 나.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9조)
- 다.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2조)
- 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21조)
- 마.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등
-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반영에 검토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11. . ~ . .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6) 전국 제정현황(5개소): 괴산군, 영양군, 구례군, 진도군, 남해군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반사업,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거창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3조(시설물의 운영)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위탁 또는 임대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위탁료) 군수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자 선임)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 지원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배상책임)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10조(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 이용기준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하는 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고 그 일부를 시설유지 관리비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제한)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제13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건설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하는 자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위원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엄수)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및 해제 등)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품의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8조(협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방침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부진사업의 활성화나 유희시설물의 활용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현금 출납부 등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준용규정)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관리위탁 계약(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①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주민

2. 관계 공무원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

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전자 입찰 공고

□ 거창군 보건소 공고 제2017-1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위치	용역금액(원) 부가세포함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용역개요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번지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신축 = 600㎡ (2층)	64,552,000	64,552,000	60일

2. 현장설명일 : 해당사항 없음

3.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17. 11. 28. 17:00

4.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17. 12. 6. 10: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 12. 6. 11:00, 거창군보건소 입찰집행관 PC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등록)한 업체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분야)**을 등록한 업체
-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신고(등록)를 필한 엔지니어링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사항

1)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6-가-1)의 업체**로 합니다.

*공동도급은 행정안전부 예규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인 **2017.12.5.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별도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입찰 및 낙찰방법 :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8.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이상으로 응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입찰가격점수와 수행능력점수)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 취소 및 계약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습니다.

바. 본 용역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7.26.】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재무평가 선택 시 최근연도 한국은행에서 발생하는 “기업경영분석 자료” (자기자본비율 52.63%, 유동비율 181.40%) 적용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에서 재무평가는 상기 6.-가.-1)업체만 평가하며, 그 외 업체는 기술보유자현황만 평가합니다.**

② 특별신인도 평가 : 기초 금액 이상 최근 3년간 ‘건축물 관련 실시설계용역’ 에 한 함.

※ 적격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하며, 기술인력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하며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라.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 및 계약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 바. 낙찰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기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 결과 기재로 낙찰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사. 낙찰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로 합니다.
- 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 되어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하고,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체결합니다.
- 자.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차. 견적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카.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과업내용 관한 사항 : 거창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TF 팀 (☎055-940-7912)
 -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55-940-83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거창군보건소재무관

거창군 거창읍 공고 제2017-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거 창 읍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17. 11. 24. ~ 2017. 12. 8.(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명	주 소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하*효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9길 158 C동402호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9길 거열빌라 앞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생활폐기물 투기)	과태료 금200,000원

5. 공시송달내용
 - 가.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거창읍사무소 개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60개월) 체납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게 되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거창읍사무소 개발과 환경담당(☎055-940-7323, fax055-940-7299)